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74조의2제7항 개정(시행 2018. 3.27. 대통령령 제28715호)으로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
위임함에 따라,

○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-1612(2018. 5.11.)호 지방세 징수조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·심사절차·심사방법(안 제7조～제8조 신설)

○ 위원회 구성 및 회의,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·매각대행 해제 요청 (안 제9조～제11조 신설)

○ 매각재산의 인도·대금수령·배분,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(안 제12조～제15조 신설)

○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, 협의사항, 비밀유지등(안 제16조～제19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『지방세징수법』, 『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』 등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2018. 8.22. ～ 2018. 9.10.(20일간)〕

○ 규제심사 : 심사 대상이 아님〔기획감사실-5977(2018. 8. 9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5393(2018. 8.14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 중 예술품 등의 매각의 경우,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매각대행이 필요함에 따라 「지방세 징수법 시행령」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

○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,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, 위원회 구성 및 회의,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,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, 매각재산의 인도,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, 배상책임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체납세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